

『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1월 8일

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(소각, 매립)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시공 및 운영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건 물 명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
 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77-1

- 규 모

- 부지면적 : 411,456m² (시설면적 324,400m²)
- 건축면적 : 9,575.41m², 연면적 : 17,256.83m²
- 체육공원면적 : 87,056m²
- 매립면적 : 68,276m², 소각용량 : 200톤/일(100톤×2)
- 재활용선별시설 : 50톤/일, 침출수처리시설 : 300톤/일

- 조성비 : 1,184억원 (국비 344, 도비 12, 시비 828)

○ 운영보조금 : 5,824백만원[인건비 2,772, 일반운영비 641, 시설관리비 1,501, 기타(이윤및세금) 910]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환경자원화시설(소각, 매립)의 운영기간이 시공사의 의무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와 시설의 기술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계, 전기, 환경, 화공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하므로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6조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